

대학원 학칙 개정 (안)

1. 개정 사유

- 1) 부산디지털대학교 석사 및 박사과정의 구분
- 2) 유연한 학사행정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2. 주요골자

- 1) 석사 및 박사 과정의 구분
- 2) 조문내용 정비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 1 조(목적) 이 학칙은 <u>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부산디지털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기독교 중심의 교육과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봉사”를 위한 통합과 소통의 평생교육 실현과 온라인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미래형 온라인 기반의 창의융합형 실용 인재양성을 실현하고자 설치한 부산디지털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 1 조(목적) 이 학칙은 <u>부산디지털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자구 수정
제 2 조(교육목표) 대학원은 창의적 연구능력과 합리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자율형 인재, 전공의 전문성과 타학문과의 통합을 추구하는 융합 실무형 인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섬김봉사형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신설> <신설>	제 2 조(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 ① 대학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부산디지털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② 대학원은 기독교 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인류에 대해 봉사하는 미래형 온라인 교육 기반의 창의융합형 실용인재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③ 대학원은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 연구 능력과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위한 교육, 전공의 전문성과 타 학문과 통합을 위한 교육,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교육목표로 한다.	자구 수정 항 신설 항 신설
제 3 조(학위과정) ①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신설>	제 3 조(학위과정) ①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제3조의2(박사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등의 기준) ① 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라 관련 분야 전임교원 5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의 강의비율은 총 개설학점을 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전임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과정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자구 수정 가지 조문 신설

	연구실적이 2편 이상이어야 하며, 세부기준은 교육부 고시 「박사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따른다.	
제 4 조(학과 및 입학정원)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신설>	제 4 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한국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	항 번 호 신 설 항 신 설
제 6 조(입학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제 6 조(입학자격)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 2. (현행) ②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학위취득예정자가 입학 전까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입학자격을 상실한다.	자 구 수 정 항 신 설 항 신 설
제 10 조(등록) ① (생략) ② 재학생은 기본 수업연한인 4학기(특수대학원은 5학기)를 매학기 초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격, 등록금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0 조(등록) ① (현행) ② 재학생은 매학기 초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생의 연구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자 구 수 정 자 구 수 정
제 11 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6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11 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자 구 수 정
제 13 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단, 기존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제 13 조(수업연한)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4학기)이며, 박사학위 논문연구를 위한 연구학기는 1년(2학기)으로 한다. 단, 기존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자 구 수 정
제 13 조의2(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7년(특수대학원은 8년)으로 한다.	제 13 조의2(재학연한)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각각 7년으로 한다. 단, 특수대학원은 8년으로 한다.	자 구 수 정

② (생략) <신설>	② (현행)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항 신설
제 14 조(학년·학기) ① (생략) ②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사운영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제 14 조(학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 ③ 학사운영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내용 삭제 항 신설
제 15 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 15 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자구 수정
제 16 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제 16 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	자구 수정
제 18 조(휴학) ① (생략) ②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의무,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건강 상 등의 이유로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 휴학연기로 분류한다. 1. 군 휴 학 :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 2.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 3. 임신·출산휴학 :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으로 병원 진단서를 첨부 4. 육아휴학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생은 양육을 위한 휴학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남학생도 신청 가능) <신설> ④~⑥ (생략) ⑦ 휴학한 자는 학적을 보유하며, 등록금납부기간 이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⑧ (생략)	제 18 조(휴학) ① (현행) ②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현행) ④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 휴학연기로 분류한다. 1. 군 휴 학 :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2.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 첨부 3. 임신·출산휴학 :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으로 병원 진단서 첨부 4. 육아휴학 :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생은 양육을 위한 휴학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남학생도 신청 가능) ⑤ 병역의무,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건강 상 등의 이유로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⑦ (현행) ⑧ 휴학한 자는 학적을 보유하며,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⑨ (현행)	내용 삭제 자구 수정 항 신설 항 번호 변경 자구 수정 항 번호 변경
제 19 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전이라도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 총장	제 19 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하나 그 기간 전이라도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자구 수정

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은 학기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u>1/4선</u>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단, 군휴학 후 복학의 경우 학기개시 후 4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수 있다. ② 복학은 학기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u>1/4선</u>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단, 군휴학 후 복학의 경우 학기개시 후 4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③ (현행)	자구 수정
제 20 조(자퇴)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u>자진퇴학</u>(이하 “자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0 조(자퇴)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u>자퇴</u>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구 수정
제 23 조(이수학점) ① (생략) ② 일반대학원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9학점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 3학기부터는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기존 특수대학원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6학점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 4학기부터는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③ 과락 과목이 있을 경우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3 조(이수학점) ① (현행) ② 대학원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9학점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특수대학원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6학점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4학기부터는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과목이 있을 경우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제 25 조(선수과목) ① 학부과정의 전공 또는 부전공이 대학원의 전공과 다른 경우 학과 특성에 따라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단, 학부과정의 전공이 비동일계열인 자가 선수과목을 이수한 것을 증빙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②~③ (생략)	제 25 조(선수과목) ① 학부 또는 대학원의 전공이 비동일계열인 경우 학과 특성에 따라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동일계열 전공자가 선수과목을 이수했음을 증빙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자구 수정 내용 삭제 항 신설 항 번호 변경
제 28 조(폐강 및 분반) ① (생략) ② 한 강좌의 최대 수강인원은 25명으로 하고, 초과 시 분반한다.	제 28 조(폐강 및 분반) ① (현행) ② <삭제>	항 삭제
제 29 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학부의 시수를 포함하여 주당 12시간이며 대학원 강의는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직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의 책임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③~④ (생략)	제 29 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학부의 시수를 포함하여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의 책임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③~④ (현행)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제 32 조(출석인정) ① 학습요구시간이 부여된 회차(강)의 출석은 주차별 강좌개시일로부터 2주 내에 수강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단, 15주부터의 출석인정기간은 학기종료일로 한다. <신설>	제 32 조(출석인정) ① 학습요구시간이 부여된 회차(강)의 출석은 주차별 강좌개시일로부터 2주 내에 수강하면 인정된다. ② 15주부터의 출석인정기간은 학기종료일로 한다.	자구 수정 항 신설

② 출석인정기간 외에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학생의 오지출장, 장기입원, 상고 등 개인적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출석인정처리는 학기별 수업시간의 4주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③ 출석인정기간 외에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간주한다. ④ 학생이 오지출장, 장기입원, 상고 등 개인적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출석인정은 학기별 수업시간의 4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항 변 호 변 경 및 자 구 수 정 항 변 호 변 경 및 내 용 삭 제 항 변 호 변 경 및 내 용 변 경 항 신 설
제 33 조(성적평가) ① ~ ③ (생략) ④ 천재지변, 학생의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는 과목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대체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단, 대체과제는 1회로 제한한다 <신설> ⑤ 교과목 성적이 C등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되 각 과정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 학점의 평점평균은 B(3.0) 이상이어야 한다. ⑥~⑧ (생략)	제 33 조(성적평가) ① ~ ③ (현행) ④ 천재지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사가 인정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대체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⑤ 대체과제는 1회로 제한한다. ⑥ 교과목 성적이 C등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되 각 과정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B등급(3.0) 이상이어야 한다. ⑦~⑨ (현행)	자 구 수 정 항 신 설 항 변 호 변 경 및 자 구 수 정
제 34 조(성적의 불인정) (생략) 1. (생략) 2. 일반대학원 :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제 3학기, 제 4학기에 한해 12학점 인정) (단, 기존 특수대학원은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제 4학기, 제 5학기에 한해 9학점 인정) 3.~5. (생략)	제 34 조(성적의 불인정) (현행) 1. (현행) 2. 일반대학원 :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단, 기존 특수대학원은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제4학기, 제5학기에 한하여 9학점까지 인정) 3.~5. (현행)	내 용 삭 제 자 구 수 정
제 35 조(수료) ①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최저학점 24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 과정의	제 35 조(수료) ①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 과정의 수료를 인	자 구 수 정

수료를 인정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수료요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한 자 2.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3.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 B(3.0) 이상 <신설> ③ (생략)	정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수료요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수업연한(4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2. 수료에 필요한 학점(24학점)을 취득한 자 3.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 B등급(3.0) 이상 ③ 박사학위과정 수료요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수업연한(4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2. 수료에 필요한 학점(30학점)을 취득한 자 3.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 B등급(3.0) 이상 ④ (현행)	자구 수정 항 신설 항변 호변 경
제 36 조(학위수여 요건) ① 각 학과에서 수료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취득자격시험 및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논문대체 학점(6학점 이상)을 추가 취득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36 조(학위수여 요건) ① 각 학위과정에서 수료 요건을 충족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심사,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경우 각각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2. 석사 논문대체 학점(6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자구 수정 호 신설 자구 수정
제 38 조(학위청구논문제출) 학위논문제출과정에 있는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 <신설> <신설>	제 38 조(학위청구논문제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위과정 수료 요건 충족 또는 충족 예정 2. 자격시험에 합격 3.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 4. 기타 대학원장이 정한 요건 충족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항 신설 및 자구 수정 호 신설 항 신설
제 39 조(논문 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는 교내외 전공, 유관전공 교수 또는 관련분야 권위자 중에서 3인(지도교수 포함)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② (생략)	제 39 조(학위청구논문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는 교내외 전공, 유관전공 교수 또는 관련분야 권위자 중에서 석사학위 논문은 3인(지도교수 포함), 박사학위 논문은 5인(지도교수 포함)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현행)	자구 수정
제 40 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단, 전문분야를 표기하여 수여하며, 학위기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 40 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단, 전문분야를 표기하여 수여하며, 학위기는 별지 제2호와 제3호 서식과 같다.	자구 수정
제 42 조(총장명의 자격증) ① 본 대학원에서 정한	제 42 조(총장명의 자격증) ① 대학원에서 정한 자격증	자구

자격증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명의 자격증을 수여한다. ② (생략)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명의 자격증을 수여한다. ② (현행)	수정
제 46 조(징계) ① (생략) 1. 대학원 학칙을 위반한 자 2.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면학질서를 저해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5.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한 자 6. 출석, 시험, 과제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전체적인 학습진행에 문제를 야기시킨 자 7. 온-오프라인상에서 언어폭력 및 스토킹을 행한 자 ② 징계는 근신(2주 이내 로그인 금지)·유기정학(2주 이상 4주 이내 로그인 금지)·무기정학(4주 이상 로그인 금지)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대학원 학생지도위원회에서 1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이외에 경고를 줄 수 있다. 이는 경고장으로 통지한다. ④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 46 조(징계) ① (현행) 1.~7. <삭제> ② 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④ <삭제>	호 삭제 자구 수정 항 삭제
제 47 조(학생회) ①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연구 및 그 응용방법을 연마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학생 자치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 47 조(학생회) ① 학생의 자치활동과 창의적인 학술연구·응용을 위해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현행) ③ <삭제>	자구 수정 항 삭제
제10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11장 자체평가	장 번호 변경 및 자구 수정
제11장 학칙 개정	제12장 학칙 개정	장 번호 변경
제 56 조(학칙 개정 절차) ①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학칙개정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의 교직원들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56 조(학칙 개정 절차) ① 대학원장은 본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관부서에 심의 요청한다. ②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의 제규정 관리규정에 따른다.	자구 수정 내용 변경

③ 학칙개정안은 심의·공포 절차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③ <삭제>	항 삭제																			
제12장 보 칙	제13장 보 칙	장 번호 변경																			
<신설>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신설>	[별표1]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 2027학년도 <table><tr><th>대학원명</th><th>학위과정</th><th>학과명</th><th>입학정원</th></tr><tr><td rowspan="2">일반대학원</td><td>석사과정</td><td>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td><td>25명</td></tr><tr><td>박사과정</td><td>상담심리학</td><td>5명</td></tr></table>	대학원명	학위과정	학과명	입학정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25명	박사과정	상담심리학	5명	신설								
대학원명	학위과정	학과명	입학정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25명																		
	박사과정	상담심리학	5명																		
<신설>	[별표2] 수여학위 <table><tr><th colspan="2">대학원명</th><th colspan="2">학과명</th><th colspan="2">학위종별</th></tr><tr><td rowspan="3">일반대학원</td><td rowspan="2">Graduate School</td><td rowspan="2">상담심리학</td><td rowspan="2">Counselling Psychology Department</td><td>상담심리학 석사</td><td>Master of Arts in Counseling Psychology</td></tr><tr><td>상담심리학 박사</td><td>Doctor of Philosophy in Counseling Psychology</td></tr><tr><td></td><td>사회복지학</td><td>Social Welfare Department</td><td>사회복지학석사</td><td>Master of Social Welfare</td></tr></table>	대학원명		학과명		학위종별		일반대학원	Graduate School	상담심리학	Counselling Psychology Department	상담심리학 석사	Master of Arts in Counseling Psychology	상담심리학 박사	Doctor of Philosophy in Counseling Psychology		사회복지학	Social Welfare Department	사회복지학석사	Master of Social Welfare	신설
대학원명		학과명		학위종별																	
일반대학원	Graduate School	상담심리학	Counselling Psychology Department	상담심리학 석사	Master of Arts in Counseling Psychology																
				상담심리학 박사	Doctor of Philosophy in Counseling Psychology																
		사회복지학	Social Welfare Department	사회복지학석사	Master of Social Welfare																
별지 서식 1호, 2호. (생략)	별지 서식 1호, 2호 (현행)	서식 추가 번호 변경																			
<신설>	별지 서식 3호 박사 학위기																				
별지 서식 3호	별지 서식 4호																				

박 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하여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부산디지털대학교 ○○대학원장(학위)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디지털대학교 총장(학위) 직인

학위등록번호 : 부산디지털대20○○(박)○○○

4.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